

	입학홍보전략센터규정 (폐지)	규정번호	3-7-20
		제정일자	2020.06.01.
		폐지일자	2023.05.01.
		개정차수	1차
		소관부서	입학홍보협력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 교무입학처 산하 입학홍보전략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.

1. 입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업무
2. 입시 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 업무
3. 산업체위탁교육 모집에 관한 업무
4.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모집에 관한 업무
5. 계약학과 모집에 관한 업무
6. 대학홍보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업무
7. 대학정책 홍보물 제작 및 대외홍보에 관한 업무
8. 대학홍보물 구매계획에 관한 업무
9. 대학 UI (UNIVERSITY IDENTITY)에 관한 사항
10. 홍보 관련 각종대회 주관에 관한 업무
11. 입시 및 홍보 관련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
12. 대학, 학과 및 입시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업무
13.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
14. 대학 입학전략 자문에 관한 업무
15. 기타 대학 홍보와 관련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3조(조직) ①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한다.

-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며 센터의 소속 교직원을 지휘, 감독한다.
- ③ 센터의 운영을 위해 사무직원을 두며 필요한 경우 연구교수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.
- ④ 사무직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인사 규정에 따른다.
- ⑤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(입학홍보전략위원회) ① 입학홍보전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, 자문, 평가하기 위하여 입학홍보전략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대학홍보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
2. 대학홍보성과분석 및 성과분석 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
3. 대학홍보물, 대학 UI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
4. 대학 입학전략 자문에 관한 업무
5. 센터의 사업계획 및 예산·결산에 관한 사항
6.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

제5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입학홍보전략센터장(이하 “센터장”이라 한다)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10인 이내로 구성한다.

- ②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.
- 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- ④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
제6조(위원장의 직무)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제7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한다.

②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제8조(회의)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 동수인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9조(서기) 위원회에 위원 중 1인을 서기로 둔다.

제10조(간사)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

제11조(비밀유지) 위원회 업무에 관계한 교직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.

제12조(회의록 작성 및 보고)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, 위원회에서 심의한 중요 사항은 위원장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3조(기타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 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 년 5 월 1 일부로 폐지한다.